

서울특별시 치유농업 조례안 관련
검 토 보 고

I. 조례안의 개요

1. 회부경위

【신복자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92)】

가. 발 의 자 : 신복자 의원(찬성자 10명)

나. 발의일자 : 2022년 10월 17일

다. 회부일자 : 2022년 10월 21일

【이숙자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98)】

가. 발 의 자 : 이숙자 의원(찬성자 9명)

나. 발의일자 : 2022년 10월 17일

다. 회부일자 : 2022년 10월 21일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신복자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92)】

가. 제안이유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0.3.24.), 시행

(2021.3.25.)되었으나 서울시에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서울시 차원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의 시행에 자치법규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치유농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 치유농업센터의 설치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 치유농업협회의 설치 근거, 구성과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협회의 운영,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안 제13조)
-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이숙자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98)】

가. 제안이유

- 정부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치유농업의 연구개발·보급과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등 치유농업의 연구개발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2020.3.24.)하여 시행(2021.3.25.)하고 있음.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의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과 보급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서울시에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근거 조례가 부재한 상태임.
- 따라서 서울시 차원의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치유농업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 치유농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치유농업지원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
-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치유농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규정함(안 제11조).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1. 조례안의 주요 내용

가. 조례안의 개요

- 「서울특별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복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92호 ; 이하 “신복자 의원안”)과 「서울특별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숙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98호 ; 이하 “이숙자 의원안”)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 차원의 치유농업 시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됨.

나. 치유농업의 동향

- 최근 치유농업¹⁾이 현대시민의 신체건강과 정서안정, 자존감 회복

1) 농업·농촌자원 또는 이와 관련한 활동과 산출물을 활용하여 국민의 심리적·사회적·인지적·신체적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시민의 관심과 지역사회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치유농업은 2000년대부터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주로 EU 회원국을 중심으로 공공지원,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면서 다양한 형태와 목적을 갖고 발전하였음[참고자료].
- 우리나라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치유농업 관련 규정이 신설(2018.9.18.)되면서 법제화와 정책추진의 기초를 마련했으며,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치유농업법」”)이 제정(2020.3.24.)되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적 기반이 마련됨.
- 이후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치유농업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사업 추진 근거만 규정되었고 독자적인 조례로 입법화되지 못함.
- 그러나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가 정부의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으로 지정(2021.7.2.)되면서 전문적인 치유농업 인력양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치유농장(8개소)의 시범운영과 ‘치유농업센터’의 전국 최초 개장(2022.10.4.) 등으로 치유농업 관련 입법의 필요성이 증대됨.

2. 조문별 검토

가. 총칙 규정

(1) 목적

- 두 조례안은 주요 목적을 「치유농업법」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차이를 보임.
- 신복자 의원안은 ▶치유농업 발전 기반 마련, ▶농업자원의 다원적 가치 확산,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유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치유농업법」과 비교할 때, ‘농업자원의 다원적 가치 확산’을 추가하면서 치유농업이 경제적 측면 외에 사회적·문화적 기능²⁾을 내포하고 있음을 강조함.
- 이숙자 의원안은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도시농업 활성화, ▶도농 간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치유농업법」에 따른 치유농업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례의 근거를 「치유농업법」으로 명시하면서 ‘도시농업 활성화’와 ‘도농 간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적에 추가하여, 치유농업이 도시농업에 포함되는 개념이자 도농상생의 수단적 측면임을 강조함.

2) 농업의 식량생산 기능 외에 식량안보, 환경보전, 농촌활력과 발전, 식품의 안전성 기능 등

신복자 의원안	이숙자 의원안	「치유농업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 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 하고 농업자원의 다원적 가치 확산과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 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유 농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 하며, 서울의 도시농업 활성화와 도시·농촌 간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치유 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 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치유농업법」은 자연친화적 치유기능 활성화를 통해 농업의 스트레스 치료 역할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생산 중심의 농업에서 새로운 성장모델을 제시하고자 제정되었으므로 두 조례안의 목적은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2) 정의

- 두 조례안은 ▶ 치유농업, ▶ 치유농업시설, ▶ 치유농업서비스 등의 용어를 대부분 「치유농업법」과 유사하게 정의함.

신복자 의원안	이숙자 의원안	「치유농업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시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치유 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라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이하 “치유농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

신복자 의원안	이숙자 의원안	「치유농업법」
<p>는 산업을 말한다.</p> <p>3.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p> <p>2.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p> <p>(해당규정 없음)</p>	<p>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p> <p>2. “치유농업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p> <p>3. “치유농업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을 회복과 증진을 목적으로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p> <p>4. “치유농업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p>	<p>는 산업을 말한다.</p> <p>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p> <p>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p> <p>4. “치유농업사”란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p>

○ 다만, 신복자 의원안은 법령의 정의와 일부 일치하지 않으므로 법률과 통일성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조례의 해석과 적용에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치유농업’의 정의 중 치유농업자원의 활용과 ‘치유농업서비스’의 정의 중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한 교육이 제외됨.

- 한편, 신복자 의원안은 「치유농업법」이나 이숙자 의원안과 달리 ‘치유농업사’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지 않는데, 이는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임.

(3) 시장의 책무

- 두 조례안은 치유농업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치유농업법」과 유사하게 규정함.

신복자 의원안	이숙자 의원안	「치유농업법」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치유농업 연구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다만, 신복자 의원안은 시장의 책무에 “치유농업 연구개발”을 명시하고 있으나, 후속 조문에 이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므로 관련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³⁾.

3) 치유농업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2023.2.16.)에서 이미 정부(농촌진흥청)와 대학에서 치유농업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이 시행되고 있는 점을 들어 조례에 이를 포함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치유농업법」에서 치유농업 연구개발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했으므로 조례에 이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나.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

(1) 기본(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 두 조례안은 치유농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지원)계획을 「치유농업법」과 유사하게 규정(안 제4조)했으나,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신복자 의원안	이숙자 의원안	「치유농업법」
<p>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치유농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 보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3호와 같음) <p>(해당규정 없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p> <p>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대한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기술보급 및 관련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7.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과학기술지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지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 2.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대한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7.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복자 의원안	이숙자 의원안	「치유농업법」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시행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 「치유농업법」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농촌진흥청장의 권한 관련 사항으로 생략함.

- 신복자 의원안은 수립시기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이 기본계획의 수립 여부를 시장의 재량으로 하면서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할 내용에서 ‘중장기 투자계획’ 과 ‘사업화 지원’ 을 제외함.
 - 이는 정부 종합계획과의 중복을 방지하면서 장기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안은 정부에 일임하여 정부와 서울시 간의 사무 분장을 명확히 하고, 서울시 차원의 독자적인 계획수립을 중시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 이숙자 의원안은 5년 단위의 지원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해당연도 시행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지원계획의 내용에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대신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을 포함함.
 - 이는 서울시의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되는 정부 종합계획과 연계 하면서 매년 시행실적을 반영한 실행계획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국제협력보다는 국내 지방자치

단체나 관련 기관 간의 연계를 중시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 한편, 두 조례안 모두 실태조사(안 제5조)를 규정하면서 서울시 치유농업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과 기본적인 자료 등을 확보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치유농업 계획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신복자 의원안	이숙자 의원안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치유농업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지원사업 및 치유농업센터

- 두 조례안은 「치유농업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 추진 근거(안 제6조)를 준용하고 사업수행 주체를 정하고 있음.

신복자 의원안	이숙자 의원안	「치유농업법」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의 마련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보급에 관한 사업 2.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체험·홍보시설의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보급 2.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 3.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 서비스 관련 교육·체험·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의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보급 2.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 3.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 서비스 관련 교육·체험·

신복자 의원안	이숙자 의원안	「치유농업법」
<p>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해당규정 없음)</p> <p>4. 치유농업 관련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p> <p>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제7조(치유농업센터의 설치)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p>	<p>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p> <p>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에 대한 지원</p> <p>5.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p> <p>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에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 (해당규정 없음)</p> <p>4. 제9조제1항 각 호의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p> <p>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농촌진흥기관(「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말하고, 이하 “지방농촌진흥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 신복자 의원안은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치유농업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치유농업센터’가 사업을 실행하도록 함(안 제7조).
- 이숙자 의원안은 「치유농업법」에서 정한 사업 외에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고, 사업실행기관을 「치유농업법」에 부합하도록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로 규정함.
- 「치유농업법」은 치유농업 사업수행기관을 「농촌진흥법」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서울시는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으로 명시하고 있고, 정부 지침⁴⁾에서도 시·도농업기술센터에서 치유농업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함.

4) 농촌지도사업 시행 지침

- 한편, 「치유농업법」은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육성 사업’을 정부(농촌진흥청장)의 사무(법 제8조)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숙자 의원안은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육성 사업’에 대한 기반 조성(기술적·재정적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법 제3조)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이를 추가함⁵⁾.

(3)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 이숙자 의원안은 「치유농업법」에서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한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

이숙자 의원안	「치유농업법」
<p>제7조(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 부설 기관 등을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양성기관에 대하여 치유농업사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13조(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 부설 기관 등을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치유농업사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교육의 내용 등 그 밖에 양성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8조(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p>	<p>제14조(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5)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단위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힘.

이숙자 의원안	「치유농업법」
<p>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취소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p>	<p>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p>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p>

-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다시 규정하는 것은 입법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나, 시민이 조례를 통해 시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한편, 이숙자 의원안은 지정 취소 대상에 대한 사전 청문과 함께 「치유농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지정 취소자를 즉시 통보하도록 하여 지정 취소에 대한 절차를 보완함(안 제8조).

다. 위원회 관련 규정

- 두 조례안은 모두 치유농업 육성과 지원에 대한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위상과 구성 등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음.

신복자 의원안	이숙자 의원안
<p>제8조(치유농업협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치유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 3. 치유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치유농업 관련 서울특별시 공무원 3.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치유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p>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p> <p>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p>	<p>제9조(치유농업지원위원회)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서울특별시 치유농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위원회가 대행한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치유농업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사항 4. 치유농업 관련 연구개발과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p>(해당규정 없음)</p> <p>(해당규정 없음)</p> <p>(해당규정 없음)</p>

신복자 의원안	이숙자 의원안
<p>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12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제13조(수당 등) 시장은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해당규정 없음)</p> <p>(해당규정 없음)</p>

- 신복자 의원안은 ▶기본계획, ▶지원대상 및 조건,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 등을 심의·자문하는 ‘치유농업협의회’의 설치 근거(안 제8조)와 구성(안 제9조), 임기(안 제10조), 위원장의 직무(안 제11조), 운영(안 제12조), 수당(안 제13조) 등 위원회 설치·운영 시에 필요한 일반적인 입법체계를 따르고 있음.
- 이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까지 조례에 규정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치유농업 정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취지임.
- 이숙자 의원안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관련 기관 협력, ▶지원사업 등을

심의·자문하는 ‘치유농업지원위원회’의 설치근거를 규정하면서 「서울특별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함.

- 이는 치유농업 관련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감안하고,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와의 통합운영을 통해 위원회의 남설을 방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임.

라. 유관 기관 협력 등

- 두 조례안은 각각 치유농업 유관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신복자 의원안	이숙자 의원안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해당규정 없음)	제10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 교육기관, 기업체 등(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치유농업 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치유농업 확산을 위해 치유농업 활성화에 공적이 탁월한 개인이나 법인,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정부의 치유농업 추진체계는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광역지방자치 단체의 지방농촌진흥기관을 거점기관으로 하면서 기존의 농업분야를

비롯해 병원, 복지관까지 정책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유관기관 간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고려할 때 조례에 이를 명시하는 것은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 한편, 이숙자 의원안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의 시정 유공자에 대한 포상규정과 별도로 치유농업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치유농업 확산을 위해 포상규정을 추가하고 있는 바, 다른 개별조례의 입법례에서도 해당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입법적 문제는 없음.

3. 종합의견

- 현재 서울시 치유농업은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재정지원사업의 한 분야로 규정되고 있으며, 치유농업에 대한 독자적인 조례는 부재함.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치유농업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규정하는 총괄적인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다만, 치유농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두 건의 조례가 유사한 시기에 발의되면서 통합적인 심사가 요구되며, 종전에 치유농업 관련 사업의 추진근거인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치유농업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경과규정을 대안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담당 조사관	연락처
최범준	02-2180-8058

[참고자료]

<외국의 치유농업 현황>

□ EU 회원국은 국가 지원기관 설립, 지방정부의 공공지원금, 세제감면, 협동조합(+농장주) 협약제도, 인증제도, 지역별 네트워크 지원 활발

○ 국가 지원기관 설립 및 운영(노르웨이·벨기에), 지방정부의 공공지원금 및 세제감면(프랑스·이탈리아·일본), 재정지원 근거 및 전국적 지원(네덜란드)

국가	정책의 특징	비고
노르웨이	정부부처 통합 위원회 구축(농림부 주관), 품질관리&보증제도 운영, 치유농장 협약제도, 치유농업 학위과정 및 평생교육, 국가재정 지원	치유농장 600여개
네덜란드	전국적 지원기관 설립 및 운영, 질 관리체계(치유농장주, 협회 등) 운영, 국민건강보험과 연계, 재정지원 근거, 치유농업 연구 프로젝트	치유농장 1,200여개
벨기에	국가 및 지역단위 지원기관의 설립 운영, 농업인 교육훈련센터, 치유농장 인정방안 마련(법, 규제), 치유농장 재정지원	치유농장 400여개
영국	국가치유농업계획 수립, 지역별 치유농장 연계체계&치유농업 기관 파트너십 구축(Care farming UK), 치유농업 프로그램 (멘토링, 퍼실리테이팅), 재정확보	개인/도시/연계 농장 240여 개
프랑스	치유농장 확대 및 네트워크 구축, 치유농업 제공자 교육훈련, 국가 및 지방정부의 공공지원금 추진, 비용에 대한 지방정부 보조	125개Network 치유농장1,200
독일	400개 병원과 사회재활센터, 180여 개 커뮤니티, 약 500여 개 녹색 작업장에 EU수준 적용, 건강보험 직업병 치료 항목에서 예산 지원	청소년,고용, 재활 중점
이탈리아	지역 보건단체, 협동조합, 농장주, 협회 등의 협력체계 및 연구를 지방정부가 지원, 사회통합과 복귀를 위한 교도소 등 일부 국가지원	치유농장 1,000여개
일본	농업의 복지/치유기능 주목, 장애인 고용, 취업, 재활, 노인복지 중점 국가농림수산 정책(복지농원) 포함, 국가연구기관에서 효과 분석	고용/복지 주도로 출발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2019), 6p.